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4. 16(금) 10:00

제22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73호
- 나. 제 출 자 : 김경완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1. 4. 5.
- 라. 회부일자 : 2021. 4. 5.

2. 제안이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구직활동 보장 및 촉진을 위해 취업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규정 정비(안 제10조제3항)
-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0조제4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3조, 제4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21. 4. 5. ~ 2021. 4. 12.
 - 2)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구직활동 보장 및 촉진을 위해 취업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

나. 주요 내용

-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규정 정비(안 제10조제3항)
-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0조제4항)

다.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코로나 19로 인한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정비하는 것으로 「청년기본법」 제4조에 따라 청년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